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509246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

2. C

3. D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김희란, 홍석룡

변론 종결 2019. 6. 21.

판결 선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5.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6. 체결된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E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8. 2. 28. 접수 제141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일부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와 피고 D은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모(母)이다. 피고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은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피고 C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7. 피고 B와 피보험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기간 2017. 3. 28.부터 2018. 3. 27.까지로 정하여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7. 3. 27. F에 위 보증계약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원료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C, D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F는 2018. 3. 29. 원고에게 '피고 B와 2017. 5. 8. 이후 거래가 중단되었고, 2018. 3. 27.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으며, 수차 입금요청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답변이 없고 입금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9. F에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 C, D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원고가 F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6%, 그 다음 날부터 90일째까지는 연 9%, 그 이후에는 연 12%이다.

바. 한편, 피고 D은 2008. 8.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였던 G, H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매매대금 110,000,000원), 2008. 11. 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D은 2018. 2. 26. 피고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2018. 2. 28. 접수 제1413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1 주식회사는 피고 E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7051), 위 법원은 2018. 12. 21. 1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E가 항소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나30622),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D이 답변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별달리 다투지 아니하였다)

다.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6. 1.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F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D은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4. 20.부터 2018. 5. 19.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9. 6. 14.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6.1. 이후부터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8. 4. 19. F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같은 날 피고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음에 반하여 피고 D은 2018. 2. 26. 피고 E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 B가 원고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이 위 보증계약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8. 3. 29. 피고 B의 물품대금지급 연체 등을 이유로 원고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8. 4. 19. F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채권이 성립되었으며, 피고 D이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추정

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0호증, 을다 제2호증의 10의 각 기재, J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서울 동대문구 K외 2필지 지상 L아파트 M호(이하 'L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178,000,000원, L 아파트의 경우 885,000,000원이어서 적극재산으로 943,000,000원(= 178,000,000원 + 885,000,000원 - L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었던 채무자 피고 C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D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주식회사 N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60,000,000원, L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었던 주식회사 O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422,561,000원, I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54,391,461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 102,394,000원, P카드에 대한 채무 합계 10,000,000원, Q에 대한
 보증채무580,000,000원 등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제외하고도 합계 1,329,346,461원 이상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증여계약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E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E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E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E가 피고 D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 E와 피고 D이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매도인들인
 G,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D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이를 피고 E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E와 피고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이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E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창희

[별지]

목 록

1동의건물의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 지 상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벽돌조
	면 적 : 제1층 호 40.92㎡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 10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66분의 27.18

청 구 원 인

1. 이행보증보험

원고는 2017. 3. 27.경 피고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이하 “피고 회사”라 함)의 부탁으로, 피고 C,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함)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기간 2017. 3. 28. ~ 2018. 3. 27.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약정을 하고,

2017. 3. 27.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기간 2017. 3. 28. ~ 2018. 3. 27.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2. 주채무내용

위 보험증권을 담보로,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원료돈 공급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원료돈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3.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보험금

피고 회사는 2018. 3. 27.경 위 보험과 관련한 물품대금채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2018. 4. 19.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보험으로 인한 물품대금채무 150,000,000원을 연체하여, 같은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나. 지연손해금

위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정 당시 구상채무자들은 위 약정 제3조 제2, 3항 소정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3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2%입니다.

4. 손해행위에 대하여

가. 피보전채권

(1) 사전구상권의 발생

위 이행보증보험약정 당시 피고 D은 원고가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나 R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독촉이나 통지없이 원고가 부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 그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 바(갑 제2호증 보증보험 약정서 제4조 참조), 피고 회사는 2018. 3. 27.경 물품대금채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무렵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보하고 있는 위 제1항 기재의 보험가입금액을 원고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기 전에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사전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2) 가사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고 할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위 제 1 내지 3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18. 3. 27.경 물품대금채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E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D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 개연성은 곧 현실화되어 피고 회사는 결국 도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D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나. 사해행위

- (1) 이에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을 상대로 한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 피고 회사가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악화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그의 재산인 별지기재 부동산

산에 대하여 보험사고발생 전인 2018. 2. 28. 피고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2)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 피고 회사가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추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청구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와 같은 사태에 이르면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자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예상하고 보험사고발생 전에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3) 피고 D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필연적으로 그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은 명백하고, 결국 원고로서는 위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입니다.

다. 악의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 피고 회사가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사정과 물품대금채무로 인한 보험사고발생으로 곧 도산하게 되리라는 점을 잘 아는 입장에 있었던 점,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특히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대가성이 없는 증여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D, E의 악의는 비교적 명백하고, 특히 수익자인 피고 E의 악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 16276 판결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 가. 피고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인 2018. 4. 20.부터 2018. 5.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 나. 피고 D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원고의 구상채권을 침해하는 손해행위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 및 원상회복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6. 관할합의 : 원고와 피고 (1)내지 (3)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